의안번호	제 10 호
의결연월일	2018. 9. 6.

-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8. 8. 29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: 2018. 8. 29.

다. 상 정 일 자: 2018. 9. 6.

제243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자위원회

#### 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김 승 영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**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**」 제39조의2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고자 함.
-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법령과 불일치,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직원 구성 변경(안 제9조)
  - "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동료상담 업무담당자는 장애인이어야 함"을 "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며,

센터의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"으로 변경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안 명 애)

○ 이 조례안은 조례 제9조 제1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이 현행법령과 불일치, 불합리한 조문내용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답변요지

O 생 략

#### 5. 토론요지

**O** 없 음

## 6. 심 사 결 과

○ <u>원안가결</u>

## 7. 소수의견 요지

O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**O** 없 음